

##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년 7월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  
(소관부서 : 충청북도증평출장소)

## 1. 제 안 사 유

-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재래시장 이용 편의와 중심부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증평 주민의 염원 사항임.
- 증평지역은 도심에 1,000여개 점포와 1일 3,000여명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형할인매장 입점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등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상인단체 및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임.
- 2002년도 시범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447백만원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어, 국고 보조금 교부 조건인 지방비(부지매입비 955백만원)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함.
-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(공유재산의 취득)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 2. 주 요 골 자

## □ 재산의 취득

- 위 치 : 괴산군 증평읍 대동리 15번지일원의 2개소
- 규 모 : 부지 2,967㎡
- 주차면수 : 149면
- 용 도 : 주차장
- 사업기간 : 2002. 7 ~ 2002. 12
- 총사업비 : 1,492,000천원(재원 국비 447,000, 도비·등 1,045,000)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

3. 예산사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재산의취득	재산의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고
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	1,492,000	-	-	-	토지, 건물 공작물 등

4.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: 「별첨」

5. 관계법령 : 「별첨」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##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 분		상반기			하반기			합 계			비고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	
취	계	토지	-	-	-	13	2,967	1,402,000	13	2,967	1,402,000	
		건물	-	-	-	-	-	-	-	-	-	
		기타	-	-	-	1	2,967	90,000	1	2,967	90,000	
득	1.매입	토지				13	2,967	1,402,000	13	2,967	1,402,000	
		건물				-	-	-	-	-	-	
		기타				-	-	-	-	-	-	
	2.교환 으로 인한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1	2,967	90,000	1	2,967	90,000	
처	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4.매각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5.양여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6.교환 으로 인한 취득	토지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

## 2002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지			추 정 가 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소유자		비고
	지 목	소재지	수량				주 소	성 명	
계	토 지		2,967	1,402,000					
	주차장		2,967	90,000					
1	주차장		2,967	90,000	2002	증평새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			주차장 설치
2	대	대동리 15	498.5	189,810	*	증평새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부지	청주시 분평동 320 우성A 102-806	권태성	
3	대	대동리 15-1	195.7	55,190	*	*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A C동 1104	권영환 외 4인	
4	대	대동리 14	231.1	77,650	*	*	청안면 장암리 435	최춘희 외1인	
5	대	대동리 21	61.5	20,664	*	*	경기 용인 대사 양지 383-19	박은철	
6	대	대동리 22	79.3	18,556	*	*	청안면 장암리 435	최춘희 외1인	
7	대	대동리 23	506.8	138,030	*	*	증동 77	김진홍	
8	대	대동리 27	4.6	1,076	*	*	경기 용인 대사 양지 383-9	박은철	
9	대	대동리 3-1	423.9	106,400	*	*	서울 강남구 도곡 동 963 역삼리커 A 104-1008	정순근	
10	대	대동리 3-5	19.8	4,633	*	*	증동리 16-3	장성오	
11	대	대동리 7-1	106.8	24,991	*	*	증동리 16-3	장성오	
12	대	신동리 53	211	147,700	*	*	서울 강남구 대치 동 890-56	(제)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유자재단	
13	종교 용지	신동리 55	347	277,300	*	*	*	*	
14	대	신동리 59	281	340,000	*	*	*	*	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 만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</li> <li>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</li> </ol>

## 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13호서식) 2~5호 생략</li> </ol>